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‘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’은 서울시 친선우호도시의 증가 및 국제교류 수요증가 등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존치가 필요하며, ‘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’ 또한 지자체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변경
- 2023년 12월 31일 ➡ 202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 2023. 7. 5.) 결과 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 신현주(☎2133-5294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: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 (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: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부 개정으로, 수반되는 비용이 없는 바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의거, 미첨부

4. 작성자 : 국제교류과 행정6급 신현주